

<개정 2025. 8. 7.>

심사번호		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		
제 호				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대표자 성명			
	사업장 소재지			
화학물질명 (총칭명, 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	
등록번호				
심사결과	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	[] 해당 ([] 인체급성유해성물질(%), [] 인체만성유해성물질(%), [] 생태유해성물질(%)) * (%)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. [] 해당 없음 [] 기타		
	표시내용			
	유해성 분류	그림문자와 신호어	유해·위험문구	
	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			
	비고			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. 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				
년 월 일				
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				직인